은평권역공영차고기본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86

2000년 5월 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  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4월 12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  나.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7일
   다. 상정일자
      ㅇ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
      (2000년 5월 1일 상정·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
   (제안설명 : 교통관리실장 차동득)
   가. 제안이유
      ㅇ 시내버스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 공영차고지가 6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은평권역 차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임.
   나. 주요내용
      ㅇ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은평권역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등에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행위제한, 시설물의 관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함.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   (전문위원 : 김태호)
   ㅇ 은평권역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인 "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"이 지난 회기에 의회에 접수·계류중에 있으며
   ㅇ 새로 접수된 계획안 근거규정으로 "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"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나, 본조례 규정은 대행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(제63조)에서 "공사·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" "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을 뿐
   ㅇ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처럼 대행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, "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"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맞지 않으며
   ㅇ 서울시 산하의 여타 공사·공단 설치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본 계획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.
   ㅇ 한편, 시설관리공단의 담당부서에서도 본조례 제18조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, 조례개정안의 발의권이 없어서 그 동안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음.
4. 질의 및 답변요지
   ㅇ 생 략
5. 토론요지
   ㅇ 없 음
6. 소위원회
   ㅇ 미구성
7. 심사결과
   ㅇ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
   ㅇ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
   ㅇ 없 음

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운영계획

우리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0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중 은평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6월말 완공예정임에 따라 동 차고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평권역 공영차고 기본 운영계획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

거 의결한다.

□은평권역 공영차고 현황

ㅇ위치 : 은평구 수색동 293-25 외 35필지

ㅇ면적 : 총 47,489㎡(14,365평)

-주차면적 : 34,779㎡(10,521평) - 73%

-건축바닥면적 : 3,182㎡(962평) - 7%

-녹지면적 : 9,528㎡(2,882평) - 20%

ㅇ주요 시설

-주차장 34,779㎡(14,365평) : 주차대수 340대(42㎡기준)

-공 동 사무실 924㎡(280평)

-차량정비시설 1,225㎡(370평) - 동시 10대 입고 정비

-세차시설 512㎡(155평) : 세차기 4대

-주유시설 320㎡(97평) : 주유기 6기

-경비실 36㎡(10평)

-전기시설(수전용량 300KVA, 22.9KV, 발전기115KW 1대, 수배전반7면, 방송설비1set, 화재경비시설 등)

-기계설비(보일러 2대, 온난방기 5대, 냉온수기 1대, 냉각탑 1대, 위생설비 등)

-기타 폐수처리시설 등

□기본 운영계획

ㅇ위탁운영기관 : 시설관리공단

ㅇ위탁업무 : 시설물의 사용허가, 사용허가의 취소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시설물의 관리,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

ㅇ운영방법 : 직영 및 임대관리 병행

직 접 운 영	임 대 관 리
건물 및 시설관리경비, 청소, 주차관리	공개경쟁 : 주유시설, 세차시설 입주업체계약 : 정비고, 매표실, 주차장 대합실, 공동사무실

ㅇ운영체계 : 24시간 연중 운영

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

의안 번호	600

2000년 5월 3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감사목적

□제18회 정례회(2000년제1차) 기간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새천년 새서울 가꾸기 등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

□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

□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,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

※ 근거법령

-지방자치법 제36조

-지방자치법 제38조

-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, 제19조의4

-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-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

2. 감사기간

ㅇ2000. 6. 20(화)~6. 29(목) 10일간

3. 감사주체

ㅇ서울특별시의회 (각 상임위원회별)

4. 감사대상기관

ㅇ서울특별시 본청

ㅇ직속행정기관

ㅇ하부행정기관

ㅇ사업소, 출장소, 합의제기관, 공기업

ㅇ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

5. 감사중점사항

1. 2000년도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2.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,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
3. 「새천년 새서울 가꾸기」계획 및 추진실적
4. 사업 집행의 공정성, 효율성, 능률성
5.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

104